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1. 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01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9. 12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승기)

가. 제안이유

-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여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도록 하고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조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읍자대상사업의 구체화(제8조 제2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함.
-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읍자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10조 제1항)
- 읍자기관의 대상을 구체화 (제10조의2 제2항)
 - 읍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국내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여신금리의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읍자금의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변동적인 금리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읍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변동적인 금리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읍자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읍자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 금리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금의 읍자대상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 이외에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현재와 같이 예탁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신축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한 사유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0조의2 제2항의 읍자기관을 지정한(지방공단 포함)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경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해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99. 1. 29)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 5. 토론 요지 : “생략”

- ## 6. 실사 결과 : 원안가결

- ##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